

##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세칙

1976. 7. 6 제정

2010. 7. 7 개정

- 제 1 조 (목적) 이 세칙은 이화여자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교직과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 조 (용어의 정의) 이 세칙에서 교직과정이라 함은 초·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및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이 정한 교원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재학 중에 이수하여야 할 소정의 과정을 말한다. (개정 2008.4.7)
- 제 3 조 (교원양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교직과정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본교에 교원양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(개정 2008.4.7)
- ②위원회는 교육대학원장, 사범대학장, 교무처장, 교무처부처장, 교무처 학적과장, 사범대학 교학부장, 교직부장 및 총장이 지명하는 외부위원 1인을 포함한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. (개정 2010.7.7)
- ③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(신설 2008.4.7)
- 제 4 조 (위원회의 회의)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 (개정 2008.4.7)
-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 5 조 (위원회의 직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교육과정의 개발·편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 (개정 2008.4.7)
  2. 교사자격무시험검정 실시 (개정 2008.4.7)
  3. 기타 본교가 별도로 정하는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의 결정 등 (개정 2008.4.7)
  4. (삭제 2008.4.7)
  5. 기타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- 제 6 조 (교직과정 관련 업무분장) ①교직과정의 교과목 개설에 필요한 교원 배정 및 교육 내용에 관한 업무는 사범대학장이 담당한다. 이때 사범대학장은 교직과정 설치 전공(또는 학과)이 속하는 대학의 학부장(또는 교학부장) 또는 전공주임교수(또는 학과장)와 협의하여야 한다.
- ②교직과정 설치 승인 신청, 교원자격증 발급 등 교직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는 교무처장이 담당한다.
- ③교육실습에 관한 업무는 교직부장이 담당한다. (개정 2010.7.7)
- 제 7 조 (교직과정 설치 전공 또는 학과 및 승인 인원) 교원자격검정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직과정 설치 전공 또는 학과 및 승인 인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(개정 2008.4.7)

제 8 조 (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) ①교직과정 설치 전공(또는 학과)의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당해 학년도 제2학기에 교직과정 이수 신청을 할 수 있다.

1. 3학기 또는 4학기에 재학 중인 자
2. 3학기를 이수하고 휴학 중인 자

(개정 2004.5.11)

②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이수신청을 한 학기말에 제1항의 신청자 중에서 당해 학기까지의 평균성적(당해 계절학기 성적은 제외한다)을 기준으로 선발한다. (개정 2004.5.11)

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, 간호과학전공은 당해 학년도 제1학기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의 신청을 받아 직전 학기까지의 평균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한다.

(개정 2008.4.7)

1. 2학기 또는 3학기에 재학 중인 자
2. 2학기를 이수하고 휴학 중인 자

(신설 2004.5.11)

④교직과정 이수예정자를 선발할 때에는 인성, 교직적성, 면담결과 등을 참작할 수 있다.

(개정 2004.5.11)

제 8 조의 2 (교직과정 부·복수전공 이수예정자의 선발) ①교직과정 부·복수전공 이수 가능 인원 및 과목은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(본조신설 2008.4.7)

제 9 조 (교직과정 교과목 이수)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전공과목(기본이수과목 포함) 및 교직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. (개정 2008.4.7)

제 10 조 (교육실습의 시기 및 협력학교) ①교육실습은 졸업예정학년 제1학기 또는 제2학기에 실시한다.

②교육실습의 시기 및 협력학교는 교육실습 직전 학기초 3주일 이내에 교직부장이 해당 전공주임교수(또는 학과장)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 (개정 2010.7.7)

③교육실습 대상학교는 사범대학 부속학교와 기타 협력학교로 하되, 실습생 및 대상학교의 규모를 감안하여 교육실습 여건을 갖춘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한다.

제 11 조 (교육실습비) ①교육실습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실습비로 충당한다.

②교육실습비는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 (개정 2008.4.7)

③교육실습을 이수해야 하는 학생은 교육실습 예정 학기 개시 3주일 이내에 교육실습비를 재무처 회계과에 납입하고, 납입통지서를 교직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 2010.7.7)

부 칙(1976. 7. 6 제정)

이 세칙은 197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78. 3. 1 개정)

이 세칙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82. 11. 25 개정)

①(시행일) 이 세칙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규정) 1980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는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구 규정을 적용한다.

③(경과규정) 1981학년도 입학생에 대하여는 제5조,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구 규정을 적용하되, 다만, 제8조 중 총학점평균에 관한 규정은 198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(1984. 12. 18 개정)

①(시행일) 이 세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규정) 1983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는 [별표 3] 내지 [별표 5]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구 규정을 적용한다.

부 칙 (1990. 6. 15 개정)

이 세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[별표 5] 중 표시과목 “전자계산”은 198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, [별표 1], [별표 5] 중 표시과목 “심리학” 및 기본이수영역 “지리”와 [별표 6]은 198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, [별표 3] 중 “철학과(철학)”와 [별표 5] 중 표시과목 “철학”은 198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, [별표 3] 중 “입학정원”과 [별표 5] 중 “교육공학”은 198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1991. 6. 22 개정)

이 세칙은 199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96. 5. 14 개정)

이 세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 다음 표에 기재된 조항들의 적용시기는 그 표에서 표시된 시기와 같다(표는 별지와 같다).

부 칙(1997. 12. 29 개정)

이 세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[별표3], [별표5], [별표6], [별표7]의 기독교학 전공의 교직이수 및 부전공표시는 199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001. 4. 6 개정)

이 세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2. 10. 7 전문개정)  
이 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4. 5. 11 개정)  
이 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8. 4. 7 개정)  
이 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0. 7. 7 개정)  
이 세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(삭제 2008.4.7)